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81호 2019. 1. 10.(목)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공 고】

제2019-26호 주민투표 및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3

제2019-27호 201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4

【고 시】

제2018-232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고시7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 ☎ 041-840-2052)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지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 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및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19년도 공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주민총수 주 민 수 연 서 대 상 주 민 수	비 고 (조례에 의한 연 서 대 상 주민총수 비율)
	계	내국인	외국인		
주 민 투 표	93,039	92,932	107	6,646	1/14
조례 제정 개·폐	93,019	92,932	87	2,326	1/40

2019년 1월 10일

공주시장 김 정 섭

201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주시장 및 시의원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① 공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수	비 고
공주시	93,019	13,953	1. 총 서명인수 : 해당 지방 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서명 2. 선거구역내 3개 읍·면·동 이상일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읍·면·동별 주민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서명 3. 2번의 읍·면·동별 서명인수가 관할 선거구역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 또는 100/10,0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서명인수를 각각 5/10,000, 100/10,000으로 함 4. 선거구역 안의 읍·면·동수가 2개인 경우는 각각 해당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유구읍	7,150	931	
이인면	3,228	484	
탄천면	2,904	436	
계룡면	5,353	803	
반포면	4,034	605	
의당면	4,225	634	
정안면	4,487	673	
우성면	5,101	765	
사곡면	2,831	425	
신평면	3,167	475	
중학동	4,406	661	
웅진동	7,382	931	
금학동	4,745	712	
옥룡동	7,629	931	
신관동	16,171	931	
월송동	10,206	931	

※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는 지역균형요건에 의하여 공주시 16개 읍·면·동의 1/3 이상인 6개 읍·면·동에서 위에 명기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고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93,019명)의 15/100인 13,95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함.

②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선거구별	청구권자총수 (외국인포함)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명)	비 고
이 인 면	3,228	156	1. 총 서명인수 : 해당 선거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 2. 선거구역내 3개읍·면·동 이상 일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20/100 이상 서명 3. 2번의 읍·면·동별 서명인수가 관할 선거구역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 또는 100/10,0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서명인수를 각각 5/10,000, 100/10,000으로 함 4. 선거구역 안의 읍·면·동수가 2개인 경우는 각각 해당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탄 천 면	2,904	156	
계 룡 면	5,353	156	
반 포 면	4,034	156	
가 선거구	15,519	3,104	
중 학 동	4,406	242	
웅 진 동	7,382	242	
금 학 동	4,745	242	
옥 룡 동	7,629	242	
나 선거구	24,162	4,833	
유 구 읍	7,150	183	
우 성 면	5,101	183	
사 곡 면	2,831	183	
신 풍 면	3,167	183	
다 선거구	18,249	3,650	
의 당 면	4,225	351	
정 안 면	4,487	351	
신 관 동	16,171	351	
월 송 동	10,206	351	
라 선거구	35,089	7,018	

※ 내국인 : 2018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공주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 외국인 : 2018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시정담당관(☎041-840-20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비례대표 시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환 대상이 아님

2019년 1월 10일

공주시장 김 정 섭

공주시 고시 제 2018-232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의거,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며,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공 주 시 장 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고시

1. 협의회 개요

-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며,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
- 창 립 일 : 2018. 10. 17.

2. 협의회 구성

- 대 상 : 39개 지방자치단체
- 임 원 : 16명(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3. 주요내용

- 행복실현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행복실현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 행복실현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협의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②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

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또는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서 울	서울시(고문), 종로구, 중구, 도봉구, 양천구, 강남구, 은평구, 서대문구	8
인 천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4
광 주	서구, 동구, 광산구	3
대 전	대덕구, 유성구	2
경 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구리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8
강 원	춘천시, 태백시	2
경 북	구미시, 의성군	2
경 남	통영시	1
충 북	증평군	1
충 남	서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4
전 북	<u>전주시</u> , 완주군, 고창군	3
전 남	나주시	1